



생식독성물질과 건강장해 예방법

생식독성물질은 생식기능 및 생식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42개 물질에 달한다.

글 편집실



특수건강진단

생식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을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. 또한 사업주는 생식독성물질 취급 업무에 종사할 노동자에 대하여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. 배치 전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생식기의 발육이상, 월경과다, 소양, 대하, 동통, 종창, 궤양, 출혈, 유산 등이 문진을 통해서 확인되도록 한다. 또한 생식기능검사로 혈청에서 여포자극호르몬(FSH), 황체형성호르몬(LH), 에스트로젠 (Estrogen) 및 테스토스테론(Testosterone) 검사를 한다.

특별안전보건 교육

사업주는 생식독성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 및 해당 업무에 종사 예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▲취급물질의 명칭 및 생식독성물질의 물리적·화학적 특성 ▲생식독성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▲국소배기장치 그 밖의 생식독성물질의 노출을 저감하기 위한 설비의 사용, 보수 및 점검의 방법 등이 포함된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한다.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. ☺

생식독성물질의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

대상 유해인자	시기	주기
	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	
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, 디메틸포름아미드	1개월 이내	6개월
납 및 그 무기화합물, 노말렉산, 니켈 카르보닐, 니트로벤젠, 디니트로톨루엔, 2-메톡시에탄올, 1-브로모프로판, 2-브로모프로판, 수은(아릴 및 알킬 화합물 제외), 아크릴아미드, 2-에톡시에탄올, 2, 3-에폭시-1-프로판올, 오산화바나듐, 이황화탄소, 일산화탄소, 카드뮴 및 그 화합물, 크롬산 염, 톨루엔, 1,2,3-트리클로로프로판	6개월 이내	12개월

<출처 : 안전보건공단>